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9월 19일
미래·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2022년 8월 26일
- 나. 제안자: 강선영 의원 외 5명
- 다. 회부일자: 2022년 9월 5일
- 라. 상정일자: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상정·의결(2022.9.19.)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강선영 의원)

□ 제안이유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공공화장실 등”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나.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다. 공공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 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12조
-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해당부서: 가족정책과

라. 기 타: 입법예고(2022. 8. 30. ~ 9. 5.) 결과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권오숙)

가. 제정취지

-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범죄 증가로 국민들의 불안이 증대하고 있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 제정내용

- 안 제2조에서 “공중화장실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고

용어의 정의

- 공중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¹⁾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
- 민간화장실: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
- 불법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
- 불법촬영기기: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 안 제3조에서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
-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는 보다 체계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불법 촬영 예방계획 수립, 관련 실태조사 실시,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
-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민간 화장실 점검지원,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며,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최근에는 기술의 첨단화로 초소형카메라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어 육안으로는 확인이 곤란하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범죄는 더욱 급증하는 추세²⁾이며,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처벌이 강화³⁾되었으나
- 이를 경찰력만으로는 예방하기 어려워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도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 자체 단속을 진행 중이고[참고: 서울시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 현재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과 강서구 안심보안관이 활동하고 있음

2) 불법촬영으로 인한 범죄 건수: 2013년 412건 → 2018년 2388건으로 약 6배 증가
[출처: 법무부 『2020성범죄 백서』]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개정
- 당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촬영 예방사업 추진 현황 -

내 용	서울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강서구 안심보안관
활동내용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장비 점검 불법촬영 범죄예방 캠페인	공공화장실·민간화장실 주5회 불법촬영장비 점검
활동장소	관내 민간개방화장실 57개소 관내 학교 합동점검(강서경찰서)	공공화장실 106개소 민간개방화장실 57개소
근무인원	10명(2인×5개조)	공공근로 6명
추진실적 (2021년)	85건물 147개소 점검 이상 없음	174건물 4,468개소 점검 이상 없음

-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불법촬영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타당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붙임 관계 법령 1부.

참고

서울시 자치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 현황

□ 조례 제정 자치구: 17개구

연번	자치구명	제정일	조례명
1	양천구	2019. 6. 4.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2	구로구	2019. 7.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3	마포구	2020. 11.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4	도봉구	2020. 12. 31.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5	강북구	2020. 7. 31.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6	관악구	2020. 9. 17.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7	서초구	2021. 1. 13.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8	은평구	2021. 3. 18.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9	금천구	2021. 5.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10	서대문구	2021. 5. 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11	동대문구	2021. 7. 1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12	성북구	2021. 7.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13	동작구	2021. 7.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14	용산구	2021. 7. 30.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15	성동구	2021. 9.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16	영등포구	2021. 9.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17	노원구	2021. 9. 3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조례 미제정 자치구: 8개구(강서, 강남, 강동, 광진, 송파, 종로, 중구, 중랑)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의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제12조(시설 점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

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